고용노동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28.(목) 9:00 (2023. 12. 28.(목) 석간)

화학물질, 똑똑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!

-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대상 합리화 -

- '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유해성·위험성 및 조치사항 공표 -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**「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**('24.1.9. 시행)한다.

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**'잔류' 단량체량으로 변경***했다. 이는 환경부의 **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**시킨 것으로, 그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개정전) '원료'에 포함된 단량체량 → (개정후) 최종 물질에 남는 '잔류' 단량체량

아울러, 올해 4분기에 제조·수입된 **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**과 그 **유해성 및 위험성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** 등도 함께 **공표**했다. 특히, 이번에 공표된 65종 중 **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, 피부부식성,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**된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"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**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**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**제도 합리화**에 노력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또한, "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, **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**"을 당부했다.

아울러, 이번에 공표된 65종을 포함하여 **'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을 하나의 파일**로 **고용노동부 누리집*에 게시**하여 검색 편의를 높였다.

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, '뉴스·소식' → '공지사항' → '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') 검색

붙임: 1. 고분자화합물 유해성·위험성 조사대상 합리화
2. 신규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도
3.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

별첨: 1. 신규화학물질 통합 공표 명단.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	책임자	과장(직무대리)	이지윤	(044-202-8966)
		담당자	주무관	강혜남	(044-202-8971)
			전문위원	김도영	(044-202-89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고분자화합물 유해성 · 위험성 조사대상 합리화

□ 검토배경

○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**저우려 고분자화합물*** **일부**는 「산업안전기본법」 상 **유해성·위험성 조사**에서 **제외**

* 고분자화합물 중 수평균분자량(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분자 수로 나눈 값), 작용기, 단량체 등을 통하여 유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
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도 **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일부**는 **화학물질 등록**을 **면제**

○ 조사 제외와 등록 면제의 기준 중 **'분자량 기준'**은 **동일**하나, **'단량체 기준'**이 **상이**

□ 개선방안

○ **유해성·위험성 조사**에서 **제외**되는 **고분자화합물**의 **단량체 함량 기준**을 **'원료'에 포함된 단량체량**에서 **최종 물질에 남는 '잔류' 단량체량**으로 **변경**

*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조사 및 등록이 면제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이 일치하게 되어, 그간 다른 기준으로 발생했던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

- **단량체가 중합**되어 **고분자**가 되는 경우 **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, '원료'에 포함된 단량체량** 보다는 **'잔류' 단량체량**이 **취급 근로자**에 **직접적인 영향**을 미치는 점,

- **EU 등 해외***에서도 **단량체 기준**을 두어 **면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** 등을 고려

* **(EU)** 고분자화합물 자체는 저유해성 물질로 취급하여 등록 면제(단량체 기준이 없음)
(미국) 고분자화합물은 등록 면제하고, 단량체가 아닌 고분자화합물의 작용기, 성상 등에 따라 일부를 등록 면제 예외

<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상 유해성·위험성 조사가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 개정 전후 비교 >

	개정 전	개정 후
분자량 기준 (조사대상 제외)	1. 수평균분자량 1만 이상, 분자량 1천 미만 5% 미만, 분자량 500 미만 2% 미만 2. 수평균분자량 1천~1만, 분자량 1천 미만 25% 미만, 분자량 500 미만 10% 미만	
단량체 기준 (조사대상 포함)	신규화학물질, 제조금지물질, 허가대상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이 **2wt%이상 원료에 포함된 경우** 조사대상	신규화학물질, 제조금지물질, 허가대상물질, 관리대상유해물질, 유해화학물질, 중점관리물질이 **0.1wt%이상 잔류하는 경우** 조사대상

※ 관련규정: 「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

붙임2 신규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도

□ **(목적) 신규화학물질**의 **유해성·위험성** 등을 **사전에 조사·확인**하여 해당 물질을 **취급**하는 **근로자의 건강**을 **보호**

□ **(법적근거)**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

□ **(주요내용)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**는 사전에 **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**(이하 '조사보고서')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**제출***

*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

○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**신규화학물질**의 **유해성·위험성** 등을 **검토** 후 사업주에게 **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*** 등을 **통보**하고, 신규화학물질의 **명칭**과 **유해성·위험성** 등을 관보 등에 **공표**

*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시설 설치, 보호구 착용 등

□ **세부 운영절차**

○ **(조사보고서 제출)**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는 **제조·수입**하려는 날 **30일**(제조·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) **전**까지 **조사보고서***를 **제출** 또는 **환경부**에 **신규화학물질**을 **등록**(환경부는 등록자료**를 고용부에 제공)

* (첨부서류) 물질안전보건자료, 독성시험자료, 제조 또는 사용·취급방법, 공정도 등

** (등록자료) 유해성·위험성 자료,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

○ **(유해·위험성 검토)** 고용부·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**신규화학물질**의 **유해성·위험성**을 **확인**

○ **(조치사항 통보)** 고용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**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***를 작성하여 **제조·수입자**에게 **통보**

* (내용)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, 유해성·위험성 분류, 예방조치 등

○ **(공표)** 고용부는 **명칭, 유해성·위험성, 제조·수입량,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**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**공표**

○ **(지도·점검) 고용부 지방관서**는 신규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의 **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** 등을 **지도·점검**

< 신규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제도 운영절차 >

① 신규화학물질 관련 자료 제출·등록	⇨	② 유해성·위험성 검토	⇨	③ 조치사항 통보	⇨	④ 공표 및 지도·점검
(사업주/환경부→고용부)		(고용부·안전보건공단)		(고용부→사업주)		(고용부/지방관서)

붙임3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명단

고용노동부공고 제2023-612호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.위험성, 연간 제조·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8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※ 일련번호: 23-23, 공표년도-접수년도-접수번호

※ 유해성·위험성: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호)에 따라 유해성·위험성을 분류

*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·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

※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: 유해성·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장·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

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.위험성, 연간 제조·수입량 및 조치사항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180(환)	2-Ethyl-2-(hydroxymethyl)-1,3-propanediol polymer with 1,6-diisocyanatohexane, 3,5-dimethyl-1H-pyrazole-5-isocyanato-1-(isocyanatomethyl)-1,3,3-trimethylcyclohexane and 3-hydroxy-2,2-dimethylpropanoic acid-blocked compds. with 2-(dimethylamino)ethanol (CAS No. 1363284-77-8)	○ 급성독성구분4(경피) ○ 급성독성구분4(흡입)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구분2 (피부자극성)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85	Alkenoic(C=2~6) acid, alkyl- polymer with (alkenyl(C=2~6)phenol, (alkyl(C=1~5)-alkyl-oxolan-yl)alkyl acrylate, (oxacyclo[4.1.0]alkyl (C=6~10))alkyl methacrylate, oxiranylalkyl methacrylate, 1-cyclohexyl-1H-pyrrole-2,5-dionem carbomonocyclic-substituted-heteromonocycle, and methacrylate, alkyl-azobis(alkylpropionate)-initiated	○ 해당없음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186	Resin acids and Rosin acids, hydrogenated, esters with bisphenol A-epichlorohydrin polymer (1,1-dimethylethyl)phenyl ether (CAS No. 2577187-57-4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87	Siloxanes and Silicones, alkyl(C=1~4), alkyl(C=1~4) [(substituted-alkenyl(C=2~6))oxy] alkyl(C=2~6), [(alkenyl(C=2~5)alkyl(C=1~4)silyl)oxy]-terminated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88	1,3-Butadiene, homopolymer, hydrogenated, 2-hydroxyethyl-terminated, bis[N-[2(or4)-methyl-5-[[[2-[(1-oxo-2-propen-1-yl)oxy]ethoxy]carbonyl]amino]phenyl]carbamates] (CAS No. 2766832-08-8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89(환)	9,9-Dimethyl-9H-fluoren-2-amine (CAS No. 108714-73-4)	○ 급성 독성 구분4(경구)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0(환)	Alcohols, (C=14~18) and (C=16~18)-unsatd. polymer with ethylene oxide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	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2 (피부 자극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2A (눈 자극성) ○ 피부과민성 구분1 ○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1(환)	Alcohols, (C=12~20) and (C=14~22)-unsatd. polymer with ethylene oxide and substituted-sulfonic acid	○ 인화성 액체 구분3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2 (피부 자극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 ○ 피부과민성 구분1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2(환)	3,9-Dimethyl-2,4,8,10-tetraoxa-3,9-diphosphaspiro[5.5]undecane 3,9-dioxide (CAS No. 3001-98-7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193(환)	(2E)-1,1,1,4,4,4-Hexafluoro-2-butene (CAS No. 66711-86-2)	○ 고압가스 액화가스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	10톤 미만	○ 취급 시 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가스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4(환)	N-(((R,R)-Carbopolycycle)carbomonocycle)-N-((bicycloheptan)carbomonocycle)-dimethyl-H-fluoren-amin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5(환)	N,4'-Diphenyl[1,1':2',1'':4'',1'''-quaterphenyl]-4'''-amine (CAS No. 2701595-23-3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6(환)	1,3-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s with adipic acid, butylated formaldehyde-melamine polymer, glycidyl neodecanoate, neopentyl glycol and trimethylolpropane (CAS No. 2041757-81-5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증기 혹은 특정조건 하에서 미스트 및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증기 혹은 특정조건 하에서 미스트 및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7(환)	Polycarbomonocyclic diol reaction products with cycloalkyl carbomonocycle and polysubstituted heteromonocycle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8(환)	2,2,3,3,5,5,6,6-Octafluoro-4-(trifluoromethyl) morpholine (CAS No. 382-28-5)	○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2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199(환)	1,12-Benzoperylene (CAS No. 191-24-2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01(환)	1,1'-[(1-Methylethylidene) bis(4,1-phenyleneoxyethylideneoxy-2,1-ethanediyl)] tricyclo[3.3.1.13,7]decane-1-carboxylate (CAS No. 836684-46-9)	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2(환, 23-23-235(환)	Alkanes, (C=8~18)-branched and linear (CAS No. 2252265-89-5)	○ 흡인 유해성 구분1 ○ 인화성 액체 구분3	1000톤 이상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3(환, 23-23-239(환)	Alkanes, (C=10~20)-branched and linear (CAS No. 928771-01-1)	○ 흡인 유해성 구분1 ○ 인화성 액체 구분4	1000톤 이상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4(환)	(trans,trans)-4-Butyl-4'-(1E)-1-propen-1-yl-1,1'-bicyclohexyl (CAS No. 694510-10-6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증기 혹은 특정조건 하에서 미스트 및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증기 혹은 특정조건 하에서 미스트 및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5(환)	2-Dec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, mono(hydrogen sulfate), ethers with polyethylene glycol monoallyl ether, ammonium salt (CAS No. 2251047-97-7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6(환)	Dichloromethyl(3,3,4,4,5,5,6,6,6-nonafluorohexyl) silane (CAS No. 38436-16-7)	○ 급성 독성 구분4(경구)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1(피부 부식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07(환)	2,2,6,6-Tetramethylpiperidine (CAS No. 768-66-1)	○ 급성 독성 구분3(경구)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1B (피부 부식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09(환)	2-Decyloxirane polymer with oxirane, monoethers with polyethylene glycol monoallyl ether (CAS No. 2251047-96-6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0(환)	Ethyl 2-acetyl-4-methyltridec-2-enoate (CAS No. 960253-23-0)	○ 급성독성 구분4(흡입) ○ 피부과민성 구분1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2(환)	Alkyl(C=1~6) [[[[(substituted heteropolycycle-yl)alkyl]carbomonocyclic]oxy]alkyl]phosphonat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3(환)	(Methylamino)acetaldehyde dimethyl acetal (CAS No. 122-07-6)	○ 급성 독성 구분4(경구)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1B (피부 부식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4(환)	Bis(4-(1,1,3,3-tetramethylbutyl)phenyl)amine (CAS No. 15721-78-5)	○ 해당없음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5(환)	((Bicycloalkan-2-yl)phenyl)-alkyl(C=1~3)-(carbopolycyclicphenyl)-fluoren-2-amin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6(환)	Substitutedalkyl(C=1~5)-alanine, sodium salt polymer with 1,6-diisocyanatohexane, alkyl(C=1~7)-H-pyrazole-blocked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18(환)	1,3,5-Tris[(2-thioxo-1,3-oxathiolan-5-yl)methyl]-1,3,5-triazine-2,4,6(1H,3H,5H)-trione (CAS No. 439694-03-8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19(환)	1-Bromodibenzofuran (CAS No. 50548-45-3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0(환)	(Heteropolycyclic)-bis(4-(heteropolycyclic)phenyl) biphenyl-amin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1	2-Propenoic acid, 2-methyl-, 2-hydroxyethyl ester, polymer with ethenylbenzene, methyl 2-methyl-2-propenoate, 2-methylpropyl 2-propenoate and oxiranylmethyl 2-methyl-2-propenoate, tert-butyl 2-ethylperoxyhexanoate and oxiranylmethyl 2-methyl-2-propenoate, tert-butyl 2-ethylperoxyhexanoate-, 2,2'-azobis(2-methylbutyronitrile)-, and di-tert-butyl peroxide-initiated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2(환)	4-Hydroxycinnamic acid (CAS No. 501-98-4)	○ 급성 독성 구분4(경구)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3(환)	2-(1-Dibenzofuranyl)-4-(2-naphthalenyl)-6-(6-phenyl-2-naphthalenyl)-1,3,5-triazine (CAS No. 2707469-55-2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4(환)	N-[1,1'-Biphenyl]-3-yl-N-3-dibenzothienyl-2-phenylphenanthro[3,4-d]oxazol-10-amine (CAS No. 2681303-56-8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5(환)	3,3-Bis(methoxymethyl)-2,6-dimethylheptane (CAS No. 129228-11-1)	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2(피부 자극성)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	1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27(환)	(1R,2R,3S,4S)-rel-Carbopolycycle-substituted, metal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8(환)	(1,1-Dimethylethyl)phosphonic acid, calcium salt (1:1) (CAS No. 81607-35-4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29(환)	Decanedioic acid, calcium salt (1:1) (CAS No. 19455-80-2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30(환)	2,4,6-Trimethyl-2,4,6-tris(3,3,3-trifluoropropyl) cyclotrisiloxane (CAS No. 2374-14-3)	○ 급성 독성 구분4(경구) ○ 생식 독성 구분 2 ○ 특정표적장기독성- 반복 노출 구분1 ○ 특정표적장기독성- 반복 노출 구분2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31(환)	11-([1,1':4',1''-Terphenyl]-2'-yl)-11,12-dihydroindolo[2,3-a]carbazole (CAS No. 2799617-40-4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32(환)	1-Amino-4-[[3-[[4-chloro-6-[(sulfophenyl)amino]-1,3,5-triazin-2-yl]amino]-2,4,6-trimethyl-5-sulfophenyl]amino]-9,10-dihydro-9,10-dioxo-2-anthracenesulfonic acid, sodium salt (1:3) (CAS No. 72214-18-7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33(환, 23-23-260(환)	Slags, ferrous metal, blast furnace (CAS No. 65996-69-2)	○ 해당없음	1000톤 이상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37(환)	Heteropolycyclic-carbopolycycle-(carbomonocyclic naphthalenyl)-triazine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38(환)	Halogenated-substituted-heteropolycycl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0(환)	Tert-alkyl(C=3~7)-metal alkanoate(C=2~6)	○ 해당없음	1000톤 이상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1(환)	Carbomonocyclic-dibenzothiophene-3-yl-heteropolycyclic amin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3(환)	Reaction products of neoalkanoic(C=10~14) acid, rare earth salts, isoalkyl(C=4~7)aluminium hydride, alkyl(C=2~5)aluminium, 1,3-butadien, aluminoxanes, iso-Bu Me, branched, cyclic and linear and alkyl(C=2~5)aluminium chloride	○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	10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4	3,3′-4,4′-Biphenyltetracarboxylic acid dianhydride (CAS No. 2420-87-3)	○ 피부과민성 구분1	100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7(환)	2-Chloro-2'-(4,6-diphenyl-1,3,5-triazin-2-yl)-[1,1'-biphenyl]-4-carbonitrile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8(환)	Neodecanoic acid, tin(2+) salt (2:1) (CAS No. 49556-16-3)	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1 (피부 부식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 ○ 피부과민성 구분1B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49(환)	2-(Dibenzo[b,d]furan-1-yl)-4-(naphthalen-2-yl)-6-(6-phenylnaphthalen-2-yl)-1,3,5-triazine, D11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50(환)	Niobium oxide, zinc, metal, and transition metal doped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1(환)	Diethoxy(methyl)silane (CAS No. 2031-62-1)	○ 인화성 액체 구분2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2(환)	2-Propyn-1-yl carbonochloridate (CAS No. 35718-08-2)	○ 인화성 액체 구분3 ○ 급성 독성 구분3(경구) ○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구분1(피부 부식성) ○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구분1 (심한 눈 손상성)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3(환)	Glycidyl alkacrylate(C=1~5) copolymer with carbopolycycle alkenoate(C=3~7), maleimide, styrene and alkacryloxy(C=1~5)alkyl(C=3~7) alkoxy(C=1~5)silane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4(환)	Alkyl(C=5~9) alkyl(C=3~7) tricarbomonocycle carbonitrile, stereoisomer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5(환)	Bis(carbomonocyclic-carbopolycyclic-carbomonocyclic)-carbomonocyclic-amine	○ 해당없음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6(환)	Ethenesulfonic acid compd. with N,N-diethylethanamine (1:1) (CAS No. 106572-70-7)	○ 해당없음	10톤 미만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
일련번호	신규화학물질의 명칭	유해성·위험성	제조 수입량	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
23-23-257(환)	Trifluoroacetyl fluoride (CAS No. 354-34-7)	○ 급성 독성 구분2(흡입) ○ 특정표적장기독성-1회 노출 구분2 ○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3	1톤 미만	○ 취급 시 가스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가스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8	Methyl 2-methyl-2-propenoate polymer with 2-ethylhexyl 2-methyl-2-propenoate, butyl 2-propenoate, ethenylbenzene and oxiranylmethyl 2-methyl-2-propenoate, tert-butyl 2-ethylperoxyhexanoate- and 2,2'-azobis(2-methylbutyronitrile)-initiated (CAS No. 부여되지 않음)	○ 발암성 구분1B	1000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59	Ethenylbenzene polymer with alkyl(C=1~6)alkyl(C=3~8) alkyl-alkenoate(C=2~7), heteromonocyclic-alkyl alkanoate(C=5~11), alkanediol(C=2~7)mono(alkyl-alkenoate(C=2~7)) and 2-propenoic acid	○ 해당없음	1000톤 이상	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미스트 및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
23-23-262(환)	Diphenyliodonium chloride (CAS No. 1483-72-3)	○ 급성 독성 구분2(경구)	1톤 미만	○ 취급 시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, 보호장갑,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○ 취급 시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